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

(CAF마크)



표준명 : SPS-KACA-0026-7175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SPS-KACA014-144 자동차용 캐빈필터



한국공기청정협회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

[2018년 06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조 및 환기용,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에어필터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① 적용품목 : 본 인증은 공기조화설비, 자동차 등에 설치되어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집진 및 탈취 기능을 가진 에어필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내 에어필터 생산업체의 제품이나 수입하는 에어필터로 한다.
 2. 제1조 이외에도 한국공기청정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업체 :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 빌딩, 사무실, 지하공간 등의 공기조화 설비에서 공기 중의 부유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필터로서, 주로 5 μ m 보다 작은 입자들을 주로 제거하는 필터
- ⑦ 자동차용 캐빈필터 : 자동차 전면에 위치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중의 분진/유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필터로서, 분진제거용과 분진/유해 동시에 가능한 복합형이 있음.

제4조 (인증시험 및 인증기준)

- ① 각 표준별 에어필터 성능에 대하여 시험하고, 그 시험결과는 [별표 1]에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인증시험 처리기간)

시험을 위한 처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 기간은 시험체선정일로부터 45일 이내
2. 처리기간에서 법정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3.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시험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 및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시험방법)

인증시험방법은 에어필터의 구분에 따라 다음항에 따른다.

- ①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 SPS-KACA-0026-7175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 ② 자동차용 캐빈필터 : SPS-KACA014-0144 자동차용 캐빈필터

제7조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2] 에 따른다.

제8조 (인증 신청 서류 접수)

①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1]서식에 의해 단체표준인증신청서 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별첨서류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설명서(카다로그)
4. 주요부품리스트(부품 제조업체/제조국가 기입)
5.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서류
6. 원자재(수입)검사서 사본
7. 제품생산공정도(작업표준서)
8. 제품검사서(전기 안전 및 성능 검사)
9. 제조 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0. 제품 생산/제조 설비 관리 목록

② 협회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받는다.

제9조 (파생제품)

①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1-1]서식에 의해 파생모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의 : 인증제품과 성능은 똑같으나 ③항의 범위내에서 수치가 다른 경우

③ 범위

1. 자동차용 캐빈필터의 파생범위

- 아래 표1의 크기별 각 구분내에서 인증받은 제품크기 이상인 제품
단, 제품 제조시 사용된 원자재 및 필터구성 사항이 모두 동일 할 경우만 파생제품으로 인정

크기	면적	높이 (프레임)
대	폭 x 길이: 0.04㎡ 이상	높이 25 mm 이상
중	폭 x 길이: 0.04㎡ 이상	높이 25 mm 미만
소	폭 x 길이: 0.04㎡ 미만	높이 상관 없음

표1. 자동차용 캐빈필터 크기 구분

2.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 제품의 특성상 파생제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파생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⑤ 파생제품의 확인시험은 생산현장에서 시험체를 선정 하여 시험한다.
- ⑥ 파생제품 확인시험의 시험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
- ⑦ 파생제품의 인증 시 인증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 ①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별표 4] 에 따른다.
- ② 시험 및 인증수수료는 협회 규정에 따르며, 시험비용은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의 사용 등)

- ① 시험성적서 교부 후 업체는 인증기준에 맞게 [별지 2]서식 인증서 신청서를 협회로 발송한다.
- ② 협회에서는 인증서 신청서를 접수 후 [별지 3]서식 단체표준인증서를 발급한다.

- ③ 인증업체는 인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마크사용료를 납무하고 제품에 인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 ④ 인증업체는 인증마크를 인증제품 및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 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⑤ 인증마크의 사용 및 서류, 홍보자료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5]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제12조 (인증 계약 기간)

- ① 협회는 인증업체와 단체표준 업무규정 [별지 19]서식에 따라 단체표준인증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 (표시사항)

- ① 인증 받은 제품, 포장 등에는 [별표 3]의 표시사항에 맞게 표시할 수 있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

제14조 (시판품 조사)

- ① 협회에서는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판품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거할 때는 [별지 4]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거된 제품시험의 수수료는 협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④ 1항에 의한 시험결과에 부적합 시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업체는 단체표준 업무규정 [별표 3] 처분기준에 따라 재시험을 신청 할 수 있다.
- ⑤ 재시험 신청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인증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⑥ 시판품조사 선정기준은 단체표준 운영규정 내규에 따른다.

제15조 (부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접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격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